#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00

발의연월일: 2022. 7. 21.

발 의 자:위성곤·김종민·소병철

신정훈 • 어기구 • 윤영덕

이개호 • 이워택 • 주철현

허 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0조).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하는"을 "따른 수익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수 익사업에 사용하는"으로 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회 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	①
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	
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	
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u>2022</u>	<u>2024</u>
<u>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	<u>년</u>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	
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	1
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	
용하는 <u>경우</u> <단서 신설>	<u>경우.</u> <u>다만, 수익사업에</u>
	따른 수익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2
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	

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u>2024년</u>	
,	
따른 수익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	
는 경우를 제외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